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4.3.(금)

美 백악관,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

- 한국산 의약품은 15% 관세 적용, 제네릭의약품·바이오시밀러는 면제 -

美 백악관은 4.2일(목)(美 현지시간)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(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)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.

특허 의약품 및 원료(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)에 대해 100% 관세를 부과하며,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,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 다만, 우리나라와 유럽연합(EU), 일본,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%의 관세를 적용하고,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.

또한,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하였다.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,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%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.

제네릭의약품,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(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, biosimilars, and associated ingredients)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, 희귀질환 치료제,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하였다.

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('25.5.4),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('25.9.29)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,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('25.11.14)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.

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%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되었으며,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.

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,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구진경 (044-203-5650)
		담당자	서기관 김태우 (044-203-5651)
			사무관 박종민 (044-203-5658)
	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	책임자	과 장 최광준 (044-203-4290)
		담당자	사무관 성소윤 (044-203-4291)
	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승현 (044-202-23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희 (044-202-2373)
	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임강섭 (044-202-2960)
		담당자	사무관 조영기 (044-202-296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